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22호 2020. 1. 13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2

공 고

-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----- 4
- 목포시의료원 2020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공시 ----- 5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고시 제 2020-24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13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	참 조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7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 30	2020.1.13.	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 30-1	2020.1.13.	건물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2-1	2020.1.13.	건물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2-2	2020.1.13.	건물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2-3	2020.1.13.	건물멸실
6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2-4	2020.1.13.	건물멸실
7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4-5	2020.1.13.	건물멸실
8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4-6	2020.1.13.	건물멸실
9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30번길 6	2020.1.13.	건물멸실
10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28번길 7	2020.1.13.	건물멸실
11	전라남도 목포시 신죽길28번길 7-1	2020.1.13.	건물멸실
12	전라남도 목포시 신춘로2번길 5-1	2020.1.13.	건물멸실
13	전라남도 목포시 죽산로30번길 3-3	2020.1.13.	건물멸실
14	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8번길 4	2020.1.13.	건물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20 - 36호

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

“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(안)”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2에 의거 전라남도 지역계획과-9442(2019.12.30.)호로 승인되었기에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01. 13.

목 포 시 장

1. 공고목적 : “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” 승인 사항
2. 주요내용
 - 계획기간 : 2015년~2030년
 - 계획인구 : 300,000인
 - 계획면적 : 112.49km²(목포시 행정구역 전역)
 - 미 래 상 :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허브 해양문화관광도시, 목포
 - 공간구조 : 2도심, 6지역중심, 2특화핵
 - 생 활 권 : 1대생활권, 3중생활권(동부생활권, 중부생활권, 서부생활권),
9소생활권(하당, 옥암, 임성, 대양, 연산, 용해, 삼학, 중앙, 도서)
 - 부문별계획 등 기타내용 : 게재생략(열람서류 참조)
3. 열람기간 : 2020. 01. 13. ~ 2020. 02. 12.
4. 열람장소 : 목포시청 도시계획과
5.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도시계획과(061-270-86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의료원 고시 제2019 - 39호

목포시의료원 2020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공시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[2020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]을 다음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.

1. 2020년도 목포시의료원 사업운영계획

계 획 별	구 분	당 년 도	전 년 도	증 감
1. 진료계획	1)연간총진료인원	244천명	240천명	4천명
	· 입 원	95천명	95천명	0천명
	· 외 래	150천명	145천명	5천명
	2)1일평균진료인원	851명	849명	2명
	· 입 원	259명	259명	0명
	· 외 래	592명	590명	2명
2. 병실가동 계획	인가병상수	299병상	299병상	0병상
	운영가능병상수(A)	299병상	299병상	0병상
	운영병상수(B)	259병상	259병상	0병상
	운영가동율(B/A)	86.62%	86.62%	0.00%
3. 진료과 운영계획	계	15과	15과	0과
	진 료 과	13과	13과	0과
	보 조 과	2과	2과	0과
4. 인력관리 계획	계	244명	239명	5명
	의 사 직	20명	20명	0명
	약 사 직	1명	1명	0명
	간 호 직	109명	109명	0명
	보 건 직	29명	26명	3명
	사 무 직	20명	18명	2명
	기 술 기 능 직	59명	34명	25명
	일 용 직	5명	30명	-25명
	과 건 직	1명	1명	0명

계 획 별	구 분	당 년 도	전 년 도	증 감
5. 재정계획	○사업수익 (A)	26,036,313천원	23,617,302천원	2,419,011천원
	. 입원수익	19,002,677천원	17,435,441천원	1,567,237천원
	. 외래수익	5,283,167천원	4,553,405천원	729,762천원
	. 기타 의료 수입	994,229천원	922,916천원	71,313천원
	. 의료외수입	756,240천원	705,540천원	50,700천원
	○사업비용 (B)	25,397,823천원	23,171,247천원	2,226,576천원
	. 재 료 비	5,045,953천원	4,500,599천원	545,354천원
	. 인 건 비	15,183,159천원	13,959,590천원	1,223,569천원
	. 의료교육연구비	0천원	0천원	0천원
	. 관 리 운 영 비	4,552,859천원	4,247,906천원	304,953천원
	. 의 료 외 비 용	615,852천원	463,152천원	152,700천원
※재정자립도	의료수익/의료비용	103%	102%	1%
6.보 조 금	○국고보조금	563,076천원	969,500천원	-406,424천원
	○지방비보조금	445,000천원	868,570천원	-423,570천원
	.진료비차액보전	0천원	0천원	0천원
	.경상보조금	0천원	0천원	0천원
	.출연금	445,000천원	868,570천원	-423,570천원
	○타회계 부담금	16,620천원	265,670천원	-249,050천원

2. 예산총칙

제1조 (총칙) 2020년도 목포시의료원의 추정 손익계산서,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		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23,397,823천원	638,491천원	26,036,313천원	-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		대	
자 산	순손실	부 채	자 본
9,677,981천원	-	8,500,981천원	1,177,000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	638,491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	-2,027,042천원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	-320,000천원
IV. 현금의 증가(I+II+III)	-1,708,552천원
V. 기초의 현금	2,195,500천원
VI. 기말의 현금(IV+V)	486,948천원

제2조(업무의 연간 예정량) 20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○ 입원환자진료	94,620명	진료수익	19,002,677천원
○ 외래환자진료	124,011명	진료수익	5,283,167천원
○ 건강검진등 기타진료	25,640명	진료수익	994,229천원

제3조(수익적수입및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		입
제1관 사업수입		26,036,313천원
제1항 의료수익		25,280,073천원
제2항 의료외수익		756,240천원
제3항 특별이익		0천원

비		용
제1관 사업비용		26,036,313천원
제1항 의료비용		24,781,971천원
제2항 의료외비용		615,852천원
제3항 특별손실		0천원

제4항 법인세등	0천원
제5항 예 비 비	638,490천원

제4조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$\times \times \times$ 천원은 당년도손익계정 유보자금 $\times \times \times$ 천원,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$\times \times \times$ 천원과 기처분 $\times \times$ 적립금 및 $\times \times$ 적립금 $\times \times$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)

수 입	
제1관 자본적 수입	7,317,802천원
제1항 투자자산	0천원
제2항 고정자산매각수입	10,000천원
제3항 고정부채수입	0천원
제4항 자 본 금	0천원
제5항 자본잉여금수입	890,000천원
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	6,417,802천원

지 출	
제1관 자본적 지출	7,317,802천원
제1항 투자자산	0천원
제2항 유형자산	3,367,042천원
제3항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	440,000천원
제4항 유동부채상환금	2,684,902천원
제5항 고정부채상환금	320,000천원
제6항 기타 자본적 지출	146,516천원
제7항 예비비	359,342천원

제5조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계속비 설명서”와 같다)

관	항	사업명	총액	년도	연할액
해당없음.					

제6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채무부담행위설명서”와 같다)

사항	기간	한도액
해당없음		

제7조(공사채 등) 공사채등 외부자금의 차입계획 및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.
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”와 같다)

- (1) 외부자금 차입예정액 : -천원
(2) 외부차입자금 상환예정액 : -천원

제8조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00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9조(예산전용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수 없다.

(1) 인건비	15,183,159천 원
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 전용금지)	85,582천 원
(3) 차입금원금상환	310,000천 원
(4) 차입금이자상환	74,400천 원
(5) 기타유동부채상환	2,684,902천 원
(6) 기타비유동부채상환	10,000천 원

제10조(대행사업경비)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등을 위하여 목포시·전라남도가 목포시의료원에 보조하는 금액은 1,024,696천원 이다.

제11조(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“와 같다)

구분	종류	명칭	수량	금액
1. 취득자산	토지	용해동 204	1	126,586천원
	건축물	스텐탱크	1	58,960천원
	건물	수술실환경 개선공사등	7	1,989,669천원
	의료장비	비접촉안압검사기외	40	897,941천원
	공기구비품	사무용 컴퓨터등	106	293,886천원
2. 처분자산	차량운반구	의료장비등		10,000천원